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노동장애인아학/노동자의힘/뇌성마비 부모회/민주노동당/보건복지민중연대(준)/민중복지연대, 보건복지기획단, 사회진보를 위한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빗장울어는 사람들/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실업자종합지원센터, 북부실업자사업단 성북·노원·강북 지부,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성동희망나눔, 금호행동하양실업극복위원회, 광진주민연대, 위례시민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강북평화의집, 독립문평화의집, 성동평화의집, 민주노동총서울본부)작은사랑큰사랑회/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부록/한국빈곤상담연구소/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번지 삼하빌딩 지층 / 전화 : 825-0143 / 전송 822-8033 / e-mail : duss21@chollian.net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기자
제 목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규탄집회 및 생계급여 반납 투쟁
날 짜 2001. 12. 4.
담 당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엄태근 (016-483-3608)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유의선 (018-201-0831)
보건복지민중연대 한 진 (016-331-1150)
첨 부 1.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농성단 기자회견문
2. 명동성당 농성을 결의하며... (수급자 최옥란)
3. 최옥란씨의 생활비와 생계급여 비교표
분 량 총 8 매 (표지포함)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귀 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엄격함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대부분이 최저생계비는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인 최옥란씨를 비롯하여 기초법 수급권자와 시민·사회·복지·실업·장애인단체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을 구성하고, 12월 3일부터 명동성당에서 1주일간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은 12월 5일(수) 오전 1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뒷편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기초법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를 반납하는 투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규탄집회 및 생계급여 반납투쟁

보도자료

- 일 시 : 2001. 12. 5. 오전 12시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뒷편
- 내 용
 1. 저소득 빈곤 계층의 최저생계는 보장하지 않은 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신자유주의, 생산적 복지,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악용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규탄
 2. 장애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조차도 안 되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최옥란(36세,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씨의 11월 생계급여를 국무총리에게 반납
- 주 최 :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 보도내용 】

기초법 수급자 최옥란(36세, 뇌성마비 1급 장애인)씨 생계급여 반납해

-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규탄집회 및 생계급여 반납투쟁 -

지난 12월 3일(월)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은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단 한 명의 저소득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규탄집회와 수급자 최옥란씨의 생계급여(26만원)를 반납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농성단은 기초법의 목적이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법은 최저생계는 고사하고 빈곤한 사람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성단은 구체적으로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추정소득과 부양비 간주제 폐지, 의료·교육·주거급여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1주일간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수급자 최옥란씨의 생계급여를 반납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옥란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광명시에서 혼자 살고 있다. 최옥란씨는 생계급여로 대달 26만원을 받고 있지만,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16만원, 장애로 인한 목 디스크 치료비용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계비를 받아왔다. 이날 최옥란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중증장애인 수급자 까지도 의료비를 지급하고, 주거급여가 2만3천이라는 사실이 전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은 생활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월 16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데, 이러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생계급여를 반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 기자회견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하고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의 목적과는 달리, 수급자 선정 기준의 강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전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살을 부추기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며,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저소득 빈곤계층은 김대중 정부의 기만성에 분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 빈곤계층 규모는 370만명 정도라 한다. 그러나 엄격한 선정기준(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는 15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종 급여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여러 가지 이유(추정소득, 부양비 등)로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인가구 수급자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최고 286천원 이지만 실제 수급자에게 지급된 평균급여액은 12만원이고, 4인가구의 경우 841천원이지만 351천원만이 지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의 경우 2종은 특별한 혜택이 없으며 비급여 부분이 너무 많아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수급권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듯 수급권자의 축소와 낮은 급여는 절대빈곤층 단 한명의 최저생계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물가상승률 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급여, 의료의 비급여 부분의 확대와 365일로 제한한 의료급여일 수 등으로 인하여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수급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 158천원의 최저생계비가 추가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이나 생계급여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실업과 빈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지출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마치 인권대통령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 구성원 중 단 한명의 최저생계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농성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경제위기와 IMF 시절 정부로 향했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려는 기제로, 그리고 이후 브레이크 없는 칼날처럼 노동자를 해고하고 신자유주의, 생산적 복지를 강요하기 위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되어져 왔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와 생산적 복지의 미명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공고된 2002년 최저생계비는 김대중 정부의 기반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많은 시민·사회·복지·장애인 단체 등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낸 공동의견서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동의견서의 내용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않는가 하면 물가상승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수준에서 2002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되었다.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은 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계층을 기만하고 죽은으로 몰아넣는 제도, 신자유주의, 생산적 복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가 공언했듯이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함을 천명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농성투쟁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곳 명동성당에서 진행하며, 김대중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도입하라!

현행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있으며, 지역별·가구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체 수급자의 37%에 해당하는 대도시 지역 수급자는 최저생계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취약아동, 장애인, 노인가구 등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있는 가구의 최저생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 158천의 추가 생계비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할뿐만 아니라, 수급자 선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은 수급 대상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2. 생계급여의 현실화 : 추정소득과 부양비 간주제를 폐지하라!

1인가구의 현금급여액은 286천원인 반면 실제 지급액은 평균 12만원이며, 4인가구 현금급여액은 841천원이지만 실제 평균적으로 351천원 만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실제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낮은 것은 신고한 소득 이외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실제로 받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비를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가구 12만원, 4인가구 251천원으로는 최저생계는 고사하고 생존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추정소득과 부양비 간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3) 교육·의료·주거급여를 현실화하라!

수급자의 의료보호 1·2종 구분폐지와 의료보호의 비급여부분을 폐지해야 한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폐지되고 생계비에서 일괄 공제된 타지원액을 통해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의료보호비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보호 1·2종을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명복 상 의료보호 1종은 의료비가 무료로 되어있고 2종의 경우 입원하였을 경우 80%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전체 의료비의 35%(1종)~ 46%(2종)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의료보험수급자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급여부분을 모두 급여화해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확대되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23천원의 주거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은 고사하고 쪽방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를 통한 저소득 빈곤계층의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은 반드시 쟁취되어야 한다.

2001년 12월 3일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노들장애인야학/노동자외침/뇌성마비 부모회/민주노동당/보건복지단체(민중복지연대, 보건복지기획단, 사회진보를 위한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빛장울어는 사람들/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실업자종합지원센터, 북부실업자사업단 성북·노원·강북 지부,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성동희망나눔, 금호행동하양실업극복위원회, 광진주민연대, 위례시민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강북명화의집, 독립문명화의집, 성동명화의집, 민주노동총서울본부)작은사랑큰사랑회/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부름/한국빈곤상담연구소/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우리의 요구사항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발생한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은폐·잠재되어 있던 절대빈곤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노숙자, 결식아동, 결식노인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같은 사회적 안정장치가 제구실을 못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절대빈곤 상황으로 전락하는 긴박한 현실에서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생활보호법에 대한 폐지와 새로운 빈곤대책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혜적인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하여 근로능력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하여 많은 기대를 하였고, 보호수준 또한 높아지고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지난 2000년 10월 시행된 이후 김대중 정부가 선전한 것과는 달리 수급자 선정기준의 강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살을 부추기고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 빈곤계층 규모는 37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선정기준(소득평가액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과 예산부족, 전문사회복지요원의 부족, 행정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는 15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규모 370만명과 비교해보아도 41%에 정도에 불과 합니다.

뿐만아니라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종 급여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그 급여 또한 추정소득과 부양비간주 등으로 인해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33만원인데 여기에 타지원액(의료, 교육, TV수신료, 전화설치비 등) 47천원을 공제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28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에게 지급된 평균급여액은 12만원이고, 4인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41천원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평균지급액은 351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의료보호 또한 1종의 경우 무료라고 하지만 타지원액을 통해 모든 수급자가 의료비 부담을 하고 있으며 비급여부분으로 인해 의료보호대상자들 또한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낮은 수급권자의 규모와 낮은 급여는 절대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체 빈곤층에 대한 수급자의 확대와 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수급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 소득평가액기준에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대도시 거주자와 장애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평가액기준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경로연금, 장애

수당,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중·고등학생의 입학급과 수업료 등)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평가액 기준에 지역별, 가구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아 서울 등 대규모 도시에 살고 있는 수급자와 월세입자, 대학생, 장애인, 영유아, 질병이 있거나 집안에 환자가 있는 수급자들은 기초적인 생활은커녕 끼니조차 잇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더라도 월세,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영유아아동 양육비 및 보육비, 장애로 인해 들어가는 추가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더라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 가구는 이러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7천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평가액기준에 장애로 인해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층 장애인가구는 이러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수급자보다 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급자가 되어 생계비를 받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추가비용으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수급자가 되면 모두 장애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중 장애 1,2급(정신지체 3급 포함)에게만 월 4만 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형편없이 낮은 장애수당의 현실화와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장애수당을 5천원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처사에 명백히 반대하며 소득평가액기준에 장애인들의 추가비용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애수당을 5천원 더 올려주는 것이 아닌 장애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 추정소득과 부양비 간주계의 폐지로 수급자의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생계급여액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계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타지원액(의료비, 학비, TV수신료 등)을 제한 금액으로 1인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생계비는 최고 286천원이고, 4인가구의 경우 841천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급자에게 지급된 평균급여액은 1인가구의 경우 12만원이고, 4인가구의 경우 351천원입니다. 이렇게 턱없이 낮은 생계비가 지급된 것은 추정소득과 부양비 간주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계비가 낮게 지급되다보니 수급자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위해 또 다시 병과 박스, 재활용품을 모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추정소득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와 상담을 거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이 '근로능력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여 소득활동을 하지 못함을 밝혀야 하며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신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대해 입증을 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있지도 않는 추정소득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자들이 자신이 소

득이 없음을, 자신이 신고한 소득 이외의 또 다른 소득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일선 사회 복지사들 또한 으레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해 거의 상담을 거치지 않고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들이 소득활동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들을 부정수급자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추정소득을 폐지하여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을 실제 소득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급자들이 병과 박스 등 재활용품을 모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소득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부가 수급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로(출가한 딸 포함)부터 매월 부양비를 일정비율정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가구원이 2명이고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이 4인이며 소득이 150만원이 있을 경우 14만원을, 출가한 딸의 경우 52천원을 부양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150만원 정도되더라도 하더라도 매월 이와 같은 부양비를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주지도 않는 부양비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받지도 않는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생계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에게 복지를 떠넘기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이렇게 부양비를 매월 준다고 해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최저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부양비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나 처사입니다.

3.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상향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의무화시켜 그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여전히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그 가족과 형제자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을 모두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 대신 이들에게 지급된 생계비를 강제로 징구하여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수급자신청을 포기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있으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헤쳐되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종전 생활보호법에 있지도 않았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만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에는 자녀양육비와 학비, 전(월)세, 의료비 등 소득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부양의무자가구의 지출 부분이 반영된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구 또한 소득기준에 지역별·가구유형별 지출요인을 반영한 소득평가액 기준을 적용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수급자의 의료보호 1·2종 구분폐지와 의료보호의 비급여부분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중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폐지되고 생계비에서 일괄 공제된 타지원액을 통해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의료보호비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보호 1·2종을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료보호환자들이 병원과 약국에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은 의료보호비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복상 의료보호 1종은 의료비가 무료, 2종의 경우 외래진료 1,500원을 내고 입원하였을 경우 80%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전체의료비의 35%(1종)~ 46%(2종)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의료보험수급자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부분을 없애 수급자들이 치료비를 걱정하며 병원한번 못 가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재산기준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택면적기준, 농지면적기준, 자동차기준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택, 농지, 자동차는 재산으로 환산되어 재산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면적, 농지면적, 자동차기준을 또 다시 두어 수급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용면적 15평을 초과(전세의 경우 20평)하거나, 농지를 1.07~1.59ha 이상(지역마다 적용기준 다름) 소유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수급자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이외에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농지, 자동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는 시·군·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문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택면적기준, 농지면적기준, 자동차기준은 하루빨리 삭제해야 합니다.

6. 차상위계층에게까지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자 규모를 225만명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적빈곤층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규모는 15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층의 규모는 37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의 연구(2001.8)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322만명 가운데 월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전임금계층이 52.1%로 68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1,865원 미만인 노동자는 56만명에 이르고, 9월 이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2,100만원으로 올랐지만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수는 82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기준 최저생계비가 96만원과 비교해봤을 때 최소한 225만명 정도를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보고 이들을 수급자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이하의 빈곤층 바로 위 계층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에게까지 수급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에게 필요에 따른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자활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지원대책위 참가신청서

본 단체(노동조합, 학생회 포함)는 최소한의 생존권보장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본 농성 투쟁을 지지, 지원하며 농성단 지원대책위 참가를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농성장 지지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		
	<input type="checkbox"/> 재정후원 (1만원 이상 : 서울은행 23104-1615218 유의선-농성단)		
	<input type="checkbox"/> 서명운동		
	<input type="checkbox"/> 의료, 홍보, 법률 등의 기타지원		
	* 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실천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를 해 주세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장애인수급권연대 귀중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화:02-825-0143 팩스:02-822-8033 담당자:엄태근(016-483-3608)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전화:02-848-0600 팩스:02-847-6137 담당자:유의선(018-201-0831)

뇌성마비 1급 1호 여성 중증장애인 최옥란(36세)씨의
2001년 3월 생계급여와 생계비 비교

최옥란씨는 지난 3월 최저 생계비로 639,500원을 지출한 반면 생계급여와 장애인 수당을 포함한 소득은 305,000원으로, 최저생계비 부족액이 334,500원입니다.

생계비		생계급여		부족액	
주거비 및 세금	APT 관리비	관리비, 전기, 수도세	160,000원	영구임대아파트	
	전화요금		25,000원		
	휴대폰		35,000원		
주·부식비	가스비(LNG)		4,000원		
	*주식비	쌀(10kg) 25,000원 ÷ 2월	17,500원		
	부식비	(반찬 등) 18,000원/1주	76,000원		
의류비	일반패복비		0원		
	런닝·팬티세트		0원		
의료비	의약품 구입 (복토스)	연 2회 800,000원 월 133,000원	133,000원		지병으로 인한 약품 구입비, 의료공제 안됨
	통원치료 교통비	광명↔부천 30,000원*주1회*4주	120,000원		지병(물리치료)으로 인한 통원치료 시 이용,
후생비	목욕탕 이용비	3,000원 월 2회	6,000원		
	주방용품, 교통비 기타 생필품 등		63,000원		
합계			639,500원		
생계급여			305,000원		
장애인 수당			100,000원		
합계			405,000원		
부족액			334,500원		

명동성당 농성을 결의하며.....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수급자 최옥란

어느새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하여 농성을 계획하고 있는 최옥란입니다. 저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최근에는 목 디스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추운 겨울에 농성을 결심한 것은 일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최저생계비 아니 생존자체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때문입니다.

저는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저에게 노점과 수급권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는 의료비 때문에 수급권을 선택하고 노점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조차도 포기한 저에게 정부는 월 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시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해도 26만원을 넘는데.... 아파트 관리비만도 16만원인데..... 도대체 나보고 26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러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것인지? 처음에는 실무과정에서 착오가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료비도 비급여가 많아 저 같은 중증장애안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약값도 안 되는 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무총리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빛에 의지해야 하는 내가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기초법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한 때는 죽음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급권을 반납하고 노점을 다시 시작하려고도 했는데, 한 번 반납한 노점자리를 다시 얻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동성당에서 그것도 추운 겨울에 텐트농성을 결심한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부터입니다. 수많은 수급자가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말도 안 되는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저에게 한편으로 힘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저와 같은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정부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텐트농성을 계획하고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 투쟁이 저 혼자만의 투쟁이 되지 않는

까? 나의 투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단체에서 저의 텐트농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텐트농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 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 장애인 단체에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저 혼자 농성을 시작하고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리라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저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비록 경험은 많지 않지만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에서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농성에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투쟁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모두가 여러분의 두 팔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입니다. 이 분노를 모아서 더 큰 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유지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명동성당에서 뵙겠습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수급자 최옥란 씀

2001. 11. 13.

【첨부 3】

뇌성마비 1급 1호 여성 중증장애인 최옥란(36세)씨의
2001년 3월 생계급여와 생계비 비교

최옥란씨는 지난 3월 최저 생계비로 639,500원을 지출한 반면 생계급여와 장애인 수당을 포함한 소득은 305,000원으로, 최저생계비 부족액이 334,500원입니다.

		생계비	생계급여	장애인 수당
주거비 및 세금	APT 관리비	관리비, 전기, 수도세	160,000원	영구임대아파트
	전화요금		25,000원	
	휴대폰		35,000원	
주·부식비	가스비(LNG)		4,000원	
	주식비	쌀(10kg) 25,000원 ÷ 2월	17,500원	
	부식비	(반찬 등) 18,000원/1주	76,000원	
의류비	일반패복비		0원	
	런닝·펜티세트		0원	
의료비	의약품 구입 (복토스)	연 2회 800,000원 월 133,000원	133,000원	지병으로 인한 약품 구입비, 의료공제 안됨
	통원치료 교통비	광명↔부천 30,000원*주1회*4주	120,000원	지병(골리치료)으로 인한 통원치료 시 이용,
후생비	목욕탕 이용비	3,000원 월 2회	6,000원	
	주방용품, 교통비 기타 생필품 등		63,000원	

